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임직원 윤리강령

2015.

목 차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대상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 3 조 책임완수
- 제 4 조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 제 5 조 자기계발
- 제 6 조 공정한 직무수행
- 제 7 조 이해충돌회피
- 제8조 공·사 구분
- 제9조 임직원 상호관계
- 제10조 건전한 생활
-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제3장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윤리

- 제12조 청소년 및 시민존중
- 제13조 청소년 및 시민만족
- 제14조 청소년 및 시민의 이익보호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제15조 임직원 존중
- 제16조 공정한 대우

제17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제18조 삶의 질 향상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9조 지역사회발전 기여

제20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제21조 안전 및 위험예방

제22조 녹색경영

제23조 노사화합

제24조 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제6장 보칙

제25조 준수의무와 책임

제26조 윤리강령의 운영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윤리현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상근직 및 강사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책임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재단의 업무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재단 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임직원은 재단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조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직원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재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 재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윤리

제12조(청소년 및 시민존중) 임직원은 청소년 및 시민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청소년 및 시민을 존중하고 청소년 및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청소년 및 시민이 만족하도록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청소년 및 시민만족) ① 임직원은 청소년 및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청소년 및 시민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청소년 및 시민의 이익보호) ① 모든 임직원은 청소년 및 시민의 자산,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 행위로 청소년 및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청소년 및 시민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5조(임직원 존중) 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이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6조(공정한 대우) 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

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7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8조(삶의 질 향상) ① 재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재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9조(지역사회발전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재단을 건설한 기관으로 성장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 및 시민과 사회 각 계층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적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2조(녹색경영) 임직원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등 녹색경영 실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23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 대표, 소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6조(윤리강령의 운영) ① 대표는 재단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에 의한 포상 및 징계는 인사규정을 적용한다.